

라파엘노인데이케어센터 남구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47조 【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 48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50조 【급여비용/월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제 51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센터생활 중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센터와 수급자의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센터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③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월 이용료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5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체하여 상호 간의 신뢰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 비용

1.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단위: 원 / 1일 기준)

이용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2. 본인일부부담금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감경 대상자	9%
감경 대상자	6%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실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급자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비급여 비용

구분	비 용 (부가세포함)		비고
	2026.01.01.~07.31 적용	2026.08.01.~12.31 적용	
식사비	1식당 4,000원	1식당 4,400원	실제 제공한 식사 횟수에 따라 산정
간식비	1회당 550원	1회당 600원	오전·오후 1일 2회 제공
1일 간식비	1,100원	1,200원	간식 2회 제공 기준

- ※ 식사비 및 간식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으로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 식사 및 간식비는 실제 제공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도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4. 기타 사항

-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 ② 관계 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③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2026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1. 방문요양 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감경 9%	감경 6%
30분 이상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이상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이상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이상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이상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이상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및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 ※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 야간·휴일 등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급여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2.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3.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관한 사항

-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으며, 사전에 비용 및 제공내용을 안내한다.
- ④ 본 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비급여 항목은 없다.
-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